서울特別市永登浦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案

審 査 報 告 書

1992. 9. 2.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년 7월 1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 1992년 7월 14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2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 (1992년 9월 2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정비국장 길기석)

가. 제안이유

1991년 12월 14일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1992년 6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설치근거를 규정한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우리구에 설치하고 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구 도시정비 자문위원회를 폐지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기능 (안 제2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
- 관계 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자문
-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안에 대한 자문

○ 구성 (안 제3조)

- 구성원수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 위원
- 위 원 장 : 구청장
- 부위원장 : 부구청장
- 위　　원 :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당 연 직 : 도시정비국장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 회의소집, 의결정족수 (안 제5조)

· 회 의 소 집 : 위원장이 필요 인정시 소집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소위원회 (안 제6조)

·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능별 소위원회를 둠

· 5인이상 9인이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

○ 간사, 서기 (안 제7조)

· 간 사 : 도시정비과장

· 서 기 : 도시정비계장

3.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유재한)

시·도의 도시계획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구청에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자치구 도시계획 준칙안이 시달됨으로 그 안을 검토한 바 1992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많은 조항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기능을 강화하고 치밀한 기획으로 중장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구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구민에게 효율적인 홍보와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됨.

〈관련법규〉

· 도시계획법 제75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법 제76조 (운영세칙)

· 도시계획법 제77조 (위원들의 수당 및 여비)

· 동법시행령 제52조의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동법시행령 제59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 동법시행령 제65조 (운영세칙)

· 자치구 도시계획 위원회 설치조례 준칙안 ('92. 5. 26)에 의거 설치운영 하여야 하는 기구로서 당연직 위원으로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시민국장이 포함되며 지역주민 대표인 구의원이 참여함으로 도시계획을 심도있게 심의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되리라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이윤중위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건설국장과 시민국장을 포함 시켰는데 꼭 시켜야 된다고 봅니까?

답변(전문위원 유재한) : 제가 봤을 때는 포함을 시키는게 좋을 것 같아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질의(안주영위원) : 이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하고 임기, 취지를 관계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답변(도시정비국장 길기석) :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방자치 시대의 효율적이고 그 지역의 모든 발전을 위해서 적극 참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앞으로는 소규모 도시계획 사항등이 많이 우리 자치구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구에서 도시정비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결정권과 의결권이 없는 자문역할만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비로소 이 도시계획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자문권이 이제는 의결권으로 우리구 도시계획위원으로 확대 실시되니 만큼 이번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이 지금 설명한거와 같습니다.

질의(안주영위원) : 제가 임기도 말씀 드렸는데 임기는?

답변(도시정비국장 길기석) :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 타 사 항

조례안 축조심사중 안 "6조(소위원회) 제4항에 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입안한 사항에 대해 이영규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의 제기가 있었음.

전체 회의때는 13인 정도가 되니까 가능하겠지만, 소위원회의 경우는 5인에서 9인이하라고 하는데 만일 5인의 소위원회가 구성 되었을때 과반수라고 하면 3명이고 3명에서 과반수 찬성이라고 하면 2명이 되어 이것은 조금 의결사항으로는 미흡하다고 생각됨.

안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축조심사중 이영규 위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의 제기가 있었음.

우리 의회에서도 회의를 거의 공개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회의자체를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됨.

이영규 위원의 이의제기에 대해 당초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다른 위원의 의견도 있어 찬·반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총 13명중 찬성 10명, 반대 3명으로 안 "제10조 (회의의 비공개)는 원안 가결 되었음.

9. 첨　　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안 1부.

서울特別市永登浦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案

의 안 번 호	86

제 출 년 월 일 : 1992년 7월 13일
제 출 자 : 영 등 포 구 청 장

1. 제정사유

○ 도시계획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조례로 규정 하려는 것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 위원회 설치와 동시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에 의해 운영되는 영등포구 도시정비 자문위원회는 폐지코자 함.

2. 주요골자

○ 기 능 (제2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

· 관계법령에서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정한사항의 심의, 자문

·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및 부의안에 대한 자문

○ 구 성 (제3조)

－ 구성원수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7인 이내 위원

－ 위 원 장 : 구청장, 부위원장 : 부구청장

－ 위 원 :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당연직 : 도시정비국장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 회의소집, 의결정족수 (제5조)

· 회의소집 : 위원장이 필요 인정시 소집

· 정 족 수 : 재적과반수 출석개의, 출석위원과반수 찬성의결

○ 소위원회 (제6조)

·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능별 소위원회를 둠

· 5인이상 9인이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

○ 간사, 서기 (제7조)

· 간 사 : 도시정비과장

· 서 기 : 도시정비계장

3. 제정근거

○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

○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 내지 제65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4. 예산조치 : 없 음

5. 참고사항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 법 상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22인 이내 (위원장 : 부시장)

· 현 행 : 20인으로 구성 (내부위원 8인, 외부위원 12인)

· 개정시 : 시의회 의원 추가

○ 구도시정비자문위원회 구성

· 서울시 조례상 : 위원장을 포함한 13인 이내 (위원장 : 부구청장)

· 현 행 : 13인이내 (내부위원 4인, 외부위원 9인 이내)

※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정시 : 구청장 및 구의회 의원 추가 17인이내

6. 제정조례 공포일로부터 시행

7. 관련조문 : 별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特別市永登浦區都市計劃委員會條例案

제 1 조(목적)이 조례는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법령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4.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 3 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구의회의원과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도시정비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4 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 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 6 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보며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7 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주관계장으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 8 조(수당과 여비지급) 영등포구 공무원이 아닌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자료 제출의 요구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나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 10 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의하여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 11 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 12 조(운영세칙)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